The Women's Studies 2014. Vol. 86 No. 1 pp. 7~40

# 2010회계연도 이후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성과 분석

조선주\*, 정가원\*\*, 김효주\*\*\*, 장윤선\*\*\*\*

#### 초 록

본 연구는 2010회계연도 이후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모형에 따른 관련 지 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먼저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은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당사자 들에게 재정제도로서 이해되고 있었다. 둘째, 법적 근거는 잘 갖추어져 있 다고 평가되며, 제도 도입 초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국회 심의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만 제도에 대한 지 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성 인지결산서 작성에 대한 교육은 사업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 며, 이수 현황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기 관 및 대상사업 수는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인지예산 작성 대상사업들의 성평등 목표를 통한 성과관리 정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보다는 여전히 낮 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의 도입 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산 서의 작성 여부가 여성수혜자의 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여성수혜자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한계를 감 안하더라도 본 연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 현황과 중요성. 제 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관련 정책개선에 근간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성과평가

<sup>\*</su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icho@kwdimail.re.kr)

<sup>\*\*</su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gawon@kwdimail.re.kr)

<sup>\*\*\*</su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afterxmas@kwdimail.re.kr)

<sup>\*\*\*\*</su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chys@kwdimail.re.kr)

# I. 서 론

성인지예산은 1984년 호주의 양성평등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성인지예산에 관한 행동강령이 채택된 후, 현재는 유엔여성기금(UNIFEM)과 국제개발연구센터(IRDC)와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특성상 각 국가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합의 수준, 더 나아가 예산제도의 특징, 사회경제적 환경, 정치적 변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화의 수준 또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제도화의 속도와 수준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2년 국회 여성위원회부터였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제정에 따라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정부차원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총 11개국으로 한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모로코,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이 있다. 또한 이 국가들중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함께 작성하는 국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뿐이다(기획재정부 외, 2013). 이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제도적기반이 완성되었으며, 현재는 우리나라의 재정 현실에 맞게 제도가 수정·보완되며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의 수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2).

그러나 본 연구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규모만 확대하

<sup>1) 「</sup>국가재정법」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따르면,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성인지 예산서는 정부가 의회에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되는 첨부서류로서 성평등을 위한 국가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문서라 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sup>2)</sup> 성인지예산서 작성기관 및 작성사업수는 2010년 29개 기관 195개 사업에서, 2011년 34개 기관 245개 사업, 2012년 34개 기관 254개 사업, 2013년 34개 기관 275개 사업, 2014년 42개 기관 339개 사업으로 증가하였다(기획재정부 외, 2014).

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영향력을 파악하면서 제도의 방향 과 전략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 효, 2012)는 점에 주목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단기간에 제도를 확충해 나감에 따라 지속적인 양적 성 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무 엇보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향상에 연계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도입 이후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각종 인프라 구축 연구에 집중되다 보니(김규옥, 2011), 그 효과 및 성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 면, 제도 도입 이후에는 실제 제도 운영 과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작성된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 로 한 단년도 분석 및 평가는 이루어졌으나, 제도 전반의 시행현황을 점검 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렇다보니 실제 제도의 성과물에 대해서는 추진주체들 간에도 공유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국민들의 제도 인 지도 및 공무원들의 제도 수용도 역시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제도 에 관한 근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실효성있는 방안 역시 제시되 지 못하여 실제 성불평등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지난 5년간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양성평등 제고'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를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과 중요성

성인지예산제도는 도입 당시 학자 및 관련자마다 그 개념과 범주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국외 연구인데 대표적인 연구로서 Budlender et al.(1998)

의 연구가 있다. Budlender et al.(1998)에서는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집 단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부예산 분석이다. 즉, 성 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것. 여성을 특별한 이해집 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 정책, 프로그램에 젠더 이슈를 반영하 는 것이다. 성 인지 예산의 목적은 정책과 국가재원을 배분(allocation)하는 데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학술적인 연구라 기보다는 관련 기관에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Nordic Council of Minister-Belgium Government(2001)에서는 "성 인지예산은 정부 정책이 여성과 소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남성과 소년에 대 한 효과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욕구와 우선성이 동등 하게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과정을 검토하는 것. 예산의 편성, 집행, 감 사, 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젠더분석을 실시하고, 정부 예산서에 젠더분석 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및 정부의 책무를 보여줄 수 있다. 전년도 예산의 효과와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대해 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기대효 과가 포함되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2003)에서는 "성인지예산은 예산과정에 대 한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gender-based assessment) 를 의미한다. 모든 수준의 예산과정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을 위 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이라고 정의하였다.

본격적으로 국내에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인 김영옥 외(2007)에서는 성인지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일련의활동이자 과정으로 정의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기획재정부 외, 2009)에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로 김규옥(2011)은 성인지예산제도를 기능별 분류3)위주의

국가재정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양성 평등적인 재정운용을 도모 하는 예산제도, 조선주 외(2011)는 우리나라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법정 서류로 표현한 것이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임, 권 순현 외(2012)에서는 국가예산의 편성·심의·시행·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성별화된 속성을 분석하여 성별간 자원배분의 불평등한 효과를 개선함으 로써 성평등을 추구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서는 국가재정법 제26 조에 따라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 고서(이하 "성인지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며 성인지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예산서를 기획재정부에서 취합 보완하여 예 산안 첨부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에 따른 성인지결산서는 정부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의 하나이다. 국가 재정의 운영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리·기록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57조에 따라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 지결산서"라 한다)로 성인지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 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지결산서 또한 성인지예 산서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결산서를 기획재정부에서 취합 보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성인지예산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향을 살펴 보면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성인지예 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성과관리의 수준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 성인지결산서를 법정서류로 작성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오스트리아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일반 예산제도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부 로 도입되어 "일반예산서 = 성과예산서 = 성인지예산서"의 형태를 지니고

<sup>3)</sup> 우리나라는 ①R&D ②산업·중소기업·에너지 ③SOC ④농림수산식품 ⑤보건·복지 ⑥교 육 ⑦문화·체육·관광 ⑧환경 ⑨국방(일반회계) ⑩통일·외교 ⑪공공질서·안전 ⑫일반 공공행정의 12개 분야로 국가재정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있다.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 또한 일반 예산제도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매년 제출하는 통합정책보고서(DPT,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중 한 권(성평등 보고서)으로 작성되며, 해당 예산구조는 성과주의 예산구조로 프로그램별로 예산집행 책임자가 관련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하였으며, 성평등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는 추가 지표를 만들어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조선주 외, 2013a).

앞서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은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도입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재정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다(조선주 외, 2011).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 결산하는 등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성불평등에미치는 효과와 차이를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사용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 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단년도 예산사업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포함하여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제도로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 2. 선행연구 동향

성인지예산에 관한 연구는 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은 만큼,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조사와 연구들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성인지예산의 개념에 관한 연구이며, 해당 개념이 정립되면서 성인지 예산의 범주에 관한 연구가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Budlender(2001), Sharp and Broomhill(2002)의 연구는 성인지예산을 처음 도입한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에서 '여성예산 (women's budget)'으로 지칭되던 용어를 성인지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 gender sensitive budget)으로 전환시키며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학문적 틀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성인지 예산 개념이 정립되면서 예산의 범주를 성 특정적 예산, 성 형평성 증진 예산, 주류(일반)예산으로 구분하던 초기의 분류방식(Budlender, 1996)이 주류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으로 이

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분석이 보편화 되었다(윤영진, 2011).

둘째, 예산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사례분석 연구들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예산수준별 분석(Elson, 2002)과 예산범주 유 형별 분석(Budlender and Hewitt, 2003)이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 제도 도 입 이후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연구와 더불어 성인지 예산분석 사례 연구 들이 수행된 되었다. 즉, 성인지적으로 중장기 재정 투자가 필요한 영역 및 예산배분과 사업추진의 방향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직 ·간접적인 성별 수혜귀착의 격차 및 내재된 성차별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중기 재정투자 방향에 주는 시사점과 대안적 방향(예산 등 자원 재배분, 사업설계의 변경,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사업내 집행방식의 변경 등)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정진주 외, 2008; 석재은 외, 2009; 문유경 외, 2009, 김영옥 외, 2009). 또한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한 국 가의 경우에도 나름의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정부의 사다 리(Ladder) 접근법(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 2007a)과 지방정부 의 4R 분석방법(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 2007b)등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분석평가 지표와 유사하다. 최근 에는 분석대상의 범위를 조세의 성별영향분석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Stotsky, 1997; Alesina and Ichino, 2007; 조선주 외, 2011; 김영숙 외, 2011).

셋째, 실현 가능한 제도 설계에 대한 연구들이다. 성인지예산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로서 외국제도의 소개와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연구(김 경희, 2006), 프로그램예산제도에의 적용 방안(윤영진 외, 2007) 등이 있다.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성인 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영옥 외, 2008-2010). 연구는 성 인지 예산서(안)의 시범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 최초의 성인지 예산서 가 작성 제도시행의 원년에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과 추진역량 강 화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네 번째는 성주류화 제도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김규옥 (2011)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특히 "성 인지적 관점의 주류화"단계의 핵심수단이며 성별영향평가가 주로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라면,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예산은 정책의 구체 적인 표현인 동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 문에 성 주류화 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제도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 고 하였다. 그 외 김양희 외(2006), 전기택 외(2011)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 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타 예산제도와의 관계 및 제도의 성과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김규옥(2011)에서는 성과관리예산제도를 비롯한 기존의 예산제도는 예산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 원칙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 운영시 반영해야할 하나의 관점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예산제도라기 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예산을 만들기 위한 보충적 성격의 원칙이나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성과주의예산과 성인지 예산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기도 하였다(Sharp, 2003). 기타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 시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적인 연구로 CVM을 이용한 성인지예산사업의 편익을 추정(조선주 외, 2010)과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패널 분석 연구를 시도하였다(김영숙 외, 2012).

여섯째, 제도 시행의 성과측정을 위한 연구로서 임주영 외(2012)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성과 및 문제점을 측정할 수 있는 대지표(범주)들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모형은 크게 '제도의 기반', '제도의 운영', '제도의결과 및 활용'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대항목들은 다시 세부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제도의 기반'은 특정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은 정치적 기반의 안정성에 직접 연관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적 기반', 정책수요 및 중복성을 살펴보는 '정책적 기반',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구속력을 평가하는 '법률/제도적 기반',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으로 재구성된다. 반면 '제도의 운영' 항목은 성인지예산제도가실제 운영되는 단계에 따라 '목표 및 중장기계획', '대상사업 선정', '집행 및점검'의 중항목으로 세분화된다. '목표 및 중장기계획'은 성인지예산제도가연간 성과목표 및 제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며, '대상사업 선정'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서 대상사업과 관련된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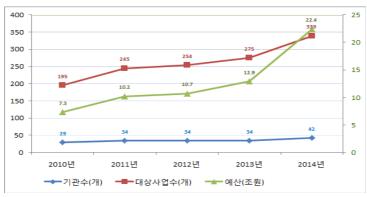
들(포괄성, 구체성, 선정절차, 특정 부처 편중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평가 한다. '집행 및 점검'은 대상사업 선정 이후의 운영내용과 관련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성과 및 활용' 항목은 제도의 성과 및 예산 운용 과정에 서의 제도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특히 제도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성평등의 제고로, 이를 평가하기에 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표로 제도의 도입 및 운영 여부, 성과목표 달성도, 결과물, 이해도, 만족도 및 부작용의 대체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윤영진(2013)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인지예 산제도의 발전단계와 단계별로 추구되어야 되는 목적을 제시하였는데, 성 인지예산제도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임을 밝히고 있다. 첫째 정책과 재정운영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 둘째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셋째 예산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성인지예산제도를 소개하는 연구,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이를 통한 성평등 제고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시적인 연구들이 있다. 김영옥 외(2007)에서는 외국 의 성인지 예산 활동 경험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분석함으 로써 국내에서의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정가원 외(20011)에서는 오스트리아 재정부 및 관련기관 조사를 통하여 성 과주의예산 체계 내에서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Diane Elson etc.(2011)에서는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를 소개하 고 있다. 한편 김영숙 외(2011)에서는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성차별의 감소 를 위한 재원배분은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고,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였을 때 성인지적인 국가재정의 운용은 지출되는 화폐단위당 효율성을 높여준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을 통해 성차별에 관한 자료 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축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런 점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불평등의 감소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Chichilnisky(2009)는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여성의 교육 및 생 활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남녀 성차별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학 적 의미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는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Ⅲ. 제도 시행현황 및 연구 분석틀

#### 1. 제도 시행현황

성인지예산제도는 도입 이후 작성기관 및 사업 수, 예산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 범위를 점차 확대해 왔다. 2009 년 처음 작성된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는 29개 중앙행정기관의 195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사업의 예산규모는 7조 4,611 억 원으로 전체 예산사업의 3.7%에 해당하였다. 2010년에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대상사업을 기금까지 확대하였으며, 작성양식을 보완하여 성과 목표를 명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 는 34개 기관의 245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전년대비 25.7%의 사업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대 상사업 수는 339개로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 및 기금 규모 22.4조원이 편성 되었다. 또한 다섯 번의 성인지예산서와 함께 세 번의 성인지결산서가 작성 되면서, 사업의 성평등한 집행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불평 등의 제도적 원인 및 개선방안 등이 도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지 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역 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림 1〉 성인지예산서 작성 규모의 변화

자료: 기획재정부 외(2014)

지난 5년간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지속적 으로 변화해왔다.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 등의 작성양식 등을 수 정·보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제도 도입 초기 성별수혜분석이 용이한 사업 들을 위주로 대상사업이 선정되었던 것에 반해, 점차 성별수혜분석의 실익 이 크고 기관의 핵심사업으로 대상사업이 변화해 왔다. 또한 단순히 작성사 업들의 성평등 목표를 취합한 수준에 머물렀던 부처의 성평등 목표 역시 기관의 임무와 특성을 반영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2011년 도 성인지예산서, 부터는 작성항목에 '성과목표' 항목을 추가하여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사업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인지결산서에서는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치를 작성하여 예산 서에서 목표하였던 목표치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관한 원인 및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도입 이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현실에 맞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이러한 자리매김 과정에서 나타났던 제도의 변화 내용 역시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변화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제출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실제 제도 도입의 목적이나 중요성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도 의 발전단계 및 목적을 반영하는 운영성과 분석모형이 필요하다.

#### 2. 연구 분석틀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운영 성과 분석모형을 도출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성평 등' 사회의 구현이므로 제도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는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작성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평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sup>4)</sup>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은 성 중립적이지 않다는 가정 하에, 예산과정에서의 성 불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다음 예산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과 정책을 변화시키

및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윤영진(2013)의 연구를 보면,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추진과정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평등 인식 제고' 단계로 예산과 정책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성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는 단계이다. 두 번째 '정부 책임성 강화' 단계는 전 단계의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정부가 성 불평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산과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인 '예산과 정책의 변화'는 성인지예산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로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께 누적되어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의 개념으로, '성평등 인식 제고'를 기반으로 '정부 책임성 강화'가 가능하며, '예산과 정책의 변화'는 '성평등 인식 제고'를 기반으로 '정부 책임성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목적이다. 따라서 제도의 발전단계에 따라 제도의 도입이전부터 이후까지 각 시기별로 중점을 두고 추구되어야 하는 목적이 다르며, 목적이 다르므로 각 시기별로 요구되는 운영성과 역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시기적으로 '성평등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정부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작성된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내용들을 분석해 볼 때, '예산과 정책의 변화' 역시 사례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분석틀에서는 '예산과 정책의 변화'라는 목적까지 모두 주요항목으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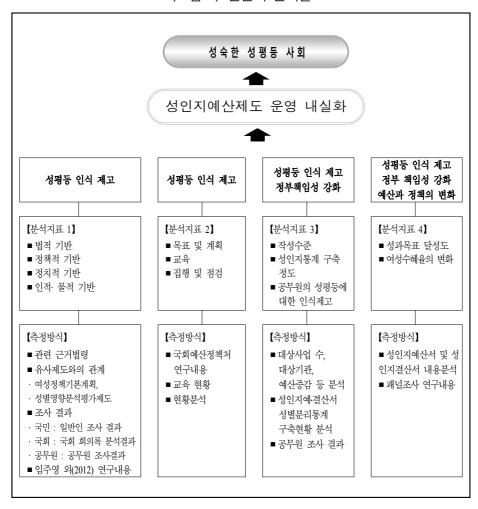
각 항목에 대한 분석지표는 임주영 외(2012, 2013)<sup>5)</sup>의 연구에서 제시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지표 1'에 해당되는 법적기반, 정책적 기반, 정치적 기반, 인적·물적기반은 전체적인 제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변화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 현 시점에서의 성과평가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으나 본 연구의 평가는 중간점검의 개념에서 시의적절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sup>5)</sup> 본 분석틀은 2013년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내용 중 저자가 집필한 부분의 일부를 발췌하여 학술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도를 구성하는 '제도의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제도 도입 준비 단계 혹은 도 입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지표 2'에 해당되는 '목표 및 계획', '교육', '집행 및 점검'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도의 정착 단계 에 해당된다. 반면 '분석지표 3'은 실제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 정에서의 인식변화나 작성내용의 질 등에 해당되므로 '성평등 인식 제고'를 넘어선 '정부 책임성 강화'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성별수 혜현황의 변화 등을 평가하는 것이 '분석지표 4'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 으로 〈그림 2〉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그림 2〉 논문의 분석틀



# Ⅳ. 분석결과

### 1. 지표 1의 분석결과

먼저 법적기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도 시행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적 근거이다. 법률은 의회 내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며,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좌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은 2002년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05년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후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명문화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 국가의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성인지예산제도가 추진되는 방식이나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시민단체나 의회가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이더라도 법적인 기반을 갖추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구체적으로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90여 개의 국가들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며, 그 중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정도가 있을 뿐이다. 결산서를 법정서류로 작성하는 국가도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된다.

다음은 정치적 기반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해당 지표는 제도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지지 및 이해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추진되는 제도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겠지만,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주체는 크게 정부, 국민, 국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는 예산과정의 주체로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예산과 정책의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해서는 이들의 성평등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주 외(2012)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인식조사의 초기 단계에 담당 공무원 들의 성인지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공감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림 3〉을 살펴보면, 성인지예산서가 작성 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이 상당히 제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1차 조사), 2012년(2차 조사), 2013년(3차 조사) 3개 년도에 걸쳐 공 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조사 항목들을 살펴보면,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부터 그에 대한 책임감 및 개선의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공감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2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이해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성 불평 등 문제에 대한 책임감 및 개선의지 역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12.4% 1차 조사 내가 담당하는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효과를 미칠 수 2차 조사 10.3% 있음을 알게 되었다 6.6% 10.0% 1차 조사 내가 당당하는 사업이 성평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9.9% 2차 조사 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5 6% 3차 조사 9.6% 1차 조사 내가 담당하는 사업에 대한 2차 조사 책임감이 강화되었다 6.6% 3차 조사 1차 조사 내 사업에서 남녀 수혜율의 차이가 크다면 시정하려고 2차 조사 노력하겠다 3차 조사 5.7% 1차 조사 국가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2차 조사 9.1%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3차 조사 7.0% 1차 조사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8.6% 2차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8.9% 3차 조사 6.2% 1차 조사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7.8% 2차 조사 이해가 증진되었다 7.0% 7.5% 3차 조사 ■매우 그렇다 ■악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림 3〉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인식의 변화

자료: 이명재 외(2013)

다음으로 국민을 살펴보면, 현대 사회에서 특정 제도가 유지되고 더 나아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제도나 정책이 그 내용에 있어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추더라도 국민의 합의나 공감이 따르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지예산제도처럼 제도의 목표가 가치의 개념인경우, 제도의 효과는 국민의 체감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지지도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동식 외(2011)의 연구결과를 보면, 제도 도입 당시 국민의 지지도와 이해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가 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편성되 고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59.8%(2010년 65.4%, 2011년 54.1%)가 동의하는 반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는 6.8%(2010년 6.7%, 2011년 6.9%)만이 인지하고 있어 국민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조사 당시에는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및「2011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지도가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 로 한 제도 홍보의 부족으로 국민들의 체감률이 낮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국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당시 빠 른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성인지예 산제도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2002년 국회 여 성위원회에서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국가재정법에 포함 되는 데는 국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국회의 역 할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1〉은 제18대 국회와 2013년 3월까지의 제19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성 인지예산 관련 심의 현황(전체 회의록 대비 성인지 예산에 관한 논의가 이 루어진 회의록 비교)을 보여준다. 본회의의 경우 전체 대비 성인지예산제도 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약 2%에 불과하며, 상임위원회 역시 3.3% 에 해당돼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내용과도 일치하는 데,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서는 성인지예 산서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언급되고 있으나 2012년과 2013년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교적 활 발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도입 이후에는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소극적인 심의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치적 기반은 국 민과 국회를 중심으로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

〈표 1〉 국회 성인지예산 심의 현황

구분		제18디		제19대 국회		
		전체	성인지	전체	성인지	
	본회의 회의록	173	3	31	1	
	국회운영위원회	66	2	15	0	
	법제사법위원회	184	2	33	0	
	정무위원회	121	0	29	0	
	기획재정위원회	121	8	24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21	5	30	0	
	행정안전위원회	121	2	29	2	
	국방위원회	89	0	24	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17	0	25	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27	1	21	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23	2	27	0	
	지식경제위원회	121	0	31	1	
	보건복지위원회	84	3	16	0	
	환경노동위원회	112	2	29	1	
	국토해양위원회	86	0	21	0	
	여성가족위원회	50	27	12	5	
	계	1,643	54	366	12	
	총계	1,816	57	397	13	

자료: 임주영 외(2013)

주: 제18대 국회는 '2008.5.30.~2012.5.29.'에 해당되며, 제19대 국회는 '2012.5.30.~2013.3.31.'에 해당됨

#### 2. 지표 2의 분석결과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부처의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하에 대상사업 담당자 교육을 진행한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성인지예산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에 걸쳐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인지예결산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이수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같다.

〈표 2〉 2012~2013년 성인지예·결산서 담당자 교육 이수 현황<sup>6)</sup>

연도	구 분	시기	교육 내용	교육이수현황
2012년	성인지결산 교육	1월	성인지결산제도의 이해 및 작성방향, 작성 실무 외	115명
	성인지예산교육	5월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및 작성방향, 작성 실무 외	122명
2013년	성인지결산 교육	1월	성인지결산제도의 이해 및 작성방향, 작성 실무 외	131명
	성인지예산교육	5월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및 작성방향, 작성 실무 외	98명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3년 7월 8일 현재)

또한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은 크게 성인지예산교육과 성인지결산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리자 교육으로 분류된다. 각 교육과정은 예결산제도 주기에 따라 성인지결산교육은 매년 1월, 성인지예산교육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리자 교육은 11월에 진행되고 있다. 성인지예·결산에 대한 담당자 교육은 1일3~4시간이소요되는 반일 교육과 1일8시간이상으로 구성된 전일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일 교육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방향과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이해 및 작성실무로 구성되며, 전일 교육은 반일교육의 내용에 더하여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한 교육이 추가로 이루어지며 제도의이해 및 작성실무에 대해서도보다상세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수는 전체 254개이며, 2013년은 전체 275개이다. 이와 관련 하여 교육이수 현황은 115면, 131명으로 전체 사업 수 대비 각각 45.3%, 47.6%이다. 사업담당자 한 명이 여러 사업을 중복하여 담당한다고 할지라도 교육이수 현황은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 3. 지표 3의 분석결과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수준은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대상기 관 및 대상사업 수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현재 90여 개

<sup>6) 2012~2013</sup>년 성인지예·결산서 담당자 교육 이수 현황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위탁교육으로 진행한 '성인지예·결산교육'현황에 대한 내부자료로, 한국양 성평등교육진흥원의 자체 교육 등으로 진행한 공무원 교육현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각 국가의 재정 및 정치환경에 맞추어 다른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사업이대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예산도 결과적으로는 성불평등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특정 성을 위한 예산이나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외의 모든 일반 예산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매해 증가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수는 제도 시행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성인지예산서인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비해「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대상기관이 29개 기관에서 34개 기관으로 증가하였으며, 작성 세부사업수는 195개에서 275개로 80개증가하였고, 총예산 대비 성인지예산의 비율 역시 3.7%에서 3.8%로 증가하였다.

〈표 3〉 국가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단위: 개, 수, %, 억원)

회계 연도	작성 부처	전 부처 (위원회 포함)	비율	작성 세부 사업수	총 사업수	비율	예산	총예산	비율
2010	29	50	58.0	195	8,000	2.4	74,611	2,028,196	3.7
2011	34	50	68.0	245	10,000	2.5	101,748	3,090,000	3.3
2012	34	50	68.0	254	12,000	2.1	112,720	3,250,000	3.5
2013	34	50	68.0	275	13,000	2.1	129,137	3,420,000	3.8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부자료(2013)

한편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예산사업들의 성별통계가 구축된 점 역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양식을 살펴보면, '성별수혜분석' 항목에서 예산편성 이전 3개년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를 제시하게되어 있다. 또한 성인지결산서 역시 '성평등효과분석' 항목에서 예산집행연도를 포함, 3개년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세출예산현액 및 지출액)를 제시하게되어 있어, 다섯 번의 성인지예산서와 세번의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통계 정보

가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기준으로 할 때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을 제외한 221개 사업 중 '성별수혜현황'의 한 항목이라도 통계가 누락된 사업은 24.4%에 해당하는 54개 사업이다. 이렇게 누적된 성별통계를 통해 해당 사업의 대상자 성별 비율과 수혜자 성별 비율을 비교해 봄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으며, 향후 예산규모 및 재원배분의 방향을 검토,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별분리통계의 축적은 중요한 성과라 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통계는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정보로서 행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대상사업의 성별분리통계 작성 현황

기관	성별분리통계 작성 사업수	성별분리통계 미작성 사업 수	기관	성별분리통계 작성 사업수	성별분리통계 미작성 사업 수
국회	1	0	국가보훈처	2	2
대법원	2	0	국가인권위원회	0	2
기획재정부	1	0	방송통신위원회	0	1
교육과학기술부	10	2	금융위원회	1	0
외교통상부	1	11	국민권익위원회	1	0
통일부	3	0	국세청	1	0
법무부	6	2	관세청	1	0
국방부	2	0	조달청	2	0
행정안전부	4	1	통계청	1	0
문화체육관광부	20	2	경찰청	2	0
농림수산식품부	25	0	문화재청	3	0
지식경제부	2	2	농촌진흥청	10	1
보건복지부	19	3	산림청	2	2
환경부	5	2	중소기업청	8	0
고용노동부	19	11	특허청	2	0
여성가족부	7	7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국토해양부	3	2	합계	167	54

주: a) 성별분리통계 미작성 사업: 2010, 2011, 2012년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의 성별분리자료가 한 항목이라도 누락된 사업을 말함

자료: 조선주 외(2013a)를 재조정함

b) 해양경찰청의 경우, 제출한 1개의 대상사업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 업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아울러 김영숙 외(2012)에서는 성인지예산서 상의 성별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들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들보다 여성수혜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지표는 공무원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다.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제도 도입 초기부터 추구되는 목적은 성평등 인식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제도 운영 성과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성평등 인식의 제고와 국회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성평등 인식이 제고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영진, 2013).

김동식 외(2011)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지지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관심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제도가 도입 초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응답자가 성별격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성인지예·결산제도를 통해 수혜자의 성별격차가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점 역시 밝혀졌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응답과 이로인해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예산제도에 관한 책임성이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30% 이상 나타났다. 이러한 학습효과를 고려해 볼 때,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수가 증가할수록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은 점차 제고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기 이전보다 첫 번째 예산서인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은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행정부 공무원의 이해도 및 지지도를 살펴보면 김영숙 외(2012)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일반사업 담당자들의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 예산편성 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일 반사업 담당자들은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함(1차 조사결과 35.9%, 2차 조사결

과 37.9%, 3차 조사결과 51.5%) 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성인지예 ·결산서 작성 담당자들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성인지예·결 산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해당 결과는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 적인 행정부 공무원의 이해도와 지지도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4. 지표 4의 분석결과

'예산과 정책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중장기 성과에 해당하는 지표들로, 제도를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이후에 나타나는 가치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도에 대한 중간점검의 관점에서 사업별 성과목 표 달성도와 여성수혜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과목표 달성도는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 항목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성과목표' 항목은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 새로 추가된 작성항목으로, 사업 담당 공무원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 업의 성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별수혜현황'의 통계를 산출근거로 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성인지결산서에 서는 그에 대한 실적치를 작성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과목표 달성도'는 실적치가 목표치에 도달한 정도로 측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함께 작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표 5〉는 그러한 사업 중 2011회계연도와 2012회계연도 모두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성과목표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2회계연도 성과목표 달 성도는 71.1%로 전년도 66.1%에 비해 5%p 증가하였다. '성과목표' 항목은 사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 사업의 성 불평등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과목표 달성도의 평균이 증가 하였다는 것은 전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5〉기관별 2011~2012회계연도 성과목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2011		2012			
부 처	성과목표	달성	달성률	성과목표	달성	달성률	
합 계	236	156	66.1	311	221	71.1	
국회	1	1	100.0	1	-	-	
기획재정부	2	1	50.0	3	1	33.3	
대법원	_	-	-	2	1	50.0	
교육과학기술부	18	10	55.6	16	12	75.0	
외교통상부	9	7	77.8	14	12	85.7	
통일부	2	1	50.0	3	2	66.7	
법무부	7	6	85.7	15	13	86.7	
국방부	9	6	66.7	13	8	61.5	
행정안전부	9	3	33.3	11	7	63.6	
문화체육관광부	23	15	65.2	27	21	77.8	
농림수산식품부	23	19	82.6	23	18	78.3	
지식경제부	4	2	50.0	8	5	62.5	
보건복지부	24	14	58.3	37	29	78.4	
환경부	12	7	58.3	12	7	58.3	
고용노동부	21	14	66.7	29	16	55.2	
여성가족부	26	22	84.6	41	35	85.4	
국토해양부	5	4	80.0	6	3	50.0	
법제처	1	1	100.0	1	1	100.0	
국가보훈처	1	1	100.0	3	-	-	
국가인권위원회	-	-	-	3	3	100.0	
공정거래위원회	1	1	100.0	-	-	-	
금융위원회	1	1	100.0	1	1	100.0	
국민권익위원회	_	-	_	1	1	100.0	
국세청	1	1	100.0	1	1	100.0	
조달청	1	1	100.0	1	1	100.0	
통계청	1	1	100.0	1	1	100.0	
경찰청	2	2	100.0	3	2	66.7	
문화재청	3	1	33.3	3	2	66.7	
농촌진흥청	10	4	40.0	11	6	54.5	
산림청	1	1	100.0	4	2	50.0	
중소기업청	10	3	30.0	9	5	55.6	
특허청	3	1	33.3	3	2	66.7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100.0	3	1	33.3	
해양경찰청	3	3	100.0	1	1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100.0	1	1	100.0	

자료: 박수범 외(2013)

여성수혜자 비율 지표는 전체 수혜자 수 대비 여성수혜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사업 예산의 성별 배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여성수혜자 비율의 변화 추이는 사업의 성별 재원 배분 방식의 변 화추이를 의미한다.

김영숙 외(2012)의 연구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가 여성수혜자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이중차이 모형 추정결과<sup>7)</sup>), 제도의 도입 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산서의 작성 여부가 여성수혜자의 비 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여성수혜자 비율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결과(조선주 외, 2013b)를 보면 기관별로 여성수혜자 비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한 기관 을 단위로 여성수혜자의 비율 변화를 볼 때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여성 수혜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적정한 성별 배분 방식은 사업의 화경적 요인. 특성 등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경제 가 발전하고 여성의 교육 및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남녀간의 성 차별이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김영숙 외, 2012), 여성수혜자 비율의 점진적인 증가는 사회 전반 의 성 불평등 문제에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sup>7)</sup> 김영숙 외(2012)의 주요 연구문제는 '한 사업을 기준으로 그 사업이 성인지예산서를 작 성함에 따라 사업의 여성수혜자 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는가'에 있다. 따라서 3개 년의 패널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으나, 그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주요 설명변수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의 변화 유무에 따라 표본을 실험집단(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과 통제집단(성인지예산서 미작성 사업)으로 나누어 미관측 이질성을 제거하여 분석하 는 이중차이(Difference in defference: DD)모형으로 연구의 하계를 보완하였다.

〈표 6〉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0~2012년)

(단위: %)

7171	2010년	2011년		2012년	
기관	(A)	(B)	(B-A)	(C)	(C-B)
국회	49.8	56.3	(6.5)	56.5	(0.2)
대법원	50.3	50.3	(0.0)	50.3	(0.0)
기획재정부	98.5	100.0	(1.5)	99.0	(-1.0)
교육과학기술부	52.6	53.1	(0.5)	52.1	(-1.0)
외교통상부	57.2	57.8	(0.6)	55.8	(-2.0)
통일부	74.3	74.2	(-0.1)	75.1	(0.9)
법무부	49.9	49.9	(0.0)	49.9	(0.0)
국방부	4.5	4.9	(0.4)	5.0	(0.1)
행정안전부	55.2	54.7	(-0.5)	58.2	(3.5)
문화체육관광부	57.8	52.9	(-4.9)	55.9	(3.0)
농림수산식품부	56.0	58.5	(2.5)	59.2	(0.7)
지식경제부	16.4	32.6	(16.2)	28.0	(-4.6)
보건복지부	66.3	66.2	(-0.1)	65.4	(-0.8)
환경부	31.7	36.9	(5.2)	38.7	(1.8)
고용노동부	37.0	40.0	(3.0)	38.3	(-1.7)
여성가족부	49.2	49.1	(-0.1)	50.1	(1.0)
국토해양부	21.6	30.1	(8.5)	23.7	(-6.4)
국가보훈처	21.6	23.6	(2.0)	22.9	(-0.7)
금융위원회	14.3	26.7	(12.4)	25.7	(-1.0)
국민권익위원회	13.7	14.9	(1.2)	16.0	(1.1)
국세청	7.5	8.4	(0.9)	7.2	(-1.2)
관세청	66.7	71.9	(5.2)	67.6	(-4.3)
조달청	20.8	21.6	(0.8)	21.3	(-0.3)
통계청	46.3	47.8	(1.5)	48.0	(0.2)
경찰청	47.4	47.9	(0.5)	48.0	(0.1)
문화재청	29.4	30.1	(0.7)	26.4	(-3.7)
농촌진흥청	21.0	22.4	(1.4)	24.8	(2.4)
산림청	28.0	32.6	(4.6)	36.0	(3.4)
중소기업청	43.2	48.2	(5.0)	46.7	(-1.5)
특허청	39.2	39.6	(0.4)	39.9	(0.3)
식품의약품안전청	67.4	66.2	(-1.2)	73.7	(7.5)
평균	49.9	50.1	(0.2)	50.1	(0.0)

자료: 조선주 외(2013b)

# V. 결론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단계적 목표를 주요 항목으로 가 본격 도입 되어 제도 도입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도입된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2010회계연도 이후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운영현 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모형 에 따른 관련 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제 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정제도로서 이해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제도 시행의 성과를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예·결산 자료 접근 및 방대한 자료 가공의 한계 등으로 성과측정을 위한 포괄범위 및 대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과측정모형을 도출하고, 각각의 지표를 개발하여 성인지예산제 도 시행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지표 1의 분석결과 성인지예산의 법적 근거 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된다.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90여 개 의 국가들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11개국에 불과 하다. 더 나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적 기 반의 제도화 수준은 높은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기반에 있어서 는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함께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은 점차 제고되고 있 으나, 국민들의 관심 및 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회 또한 심의 가 활발한 편이 아니며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관심도가 낮다고 판 단할 수 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국회 심의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전체 발언 위워(38명)의 71.1%(27명)가 여성의워) 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형성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은 물 론 국회의 활발한 심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표 2의 분석결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교육이 사업담당자 중심 으로 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수 현황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교육대상자를 고위직 및 중간관리자까지 확대하고, 그에 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 공무원교육에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별도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이 별도 교육이 아닌 일반 예산편성 및 결산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표 3의 분석결과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수는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성인지예산서인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비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대상기관이 29개 기관에서 34개 기관으로 증가하였으며, 작성 세부사업수는 195개에서 275개로 80개 증가하였고, 총예산 대비 성인지예산의 비율 역시 3.7%에서 3.8%로 증가하였다. 다섯 번의성인지예산서와 세 번의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사업에대한 성별통계 정보가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상기관 및 사업 수의 증가, 누적된 성별통계를 통해 해당 사업의 대상자 성별 비율과 수혜자 성별비율을 비교해 봄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향후 예산규모 및 재원배분의 방향을 검토,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별분리통계의 축적은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통계는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정보로서 행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표 4의 분석결과 성과목표(성평등 목표)는 2012회계연도에는 2011회계연도 66.1%에 비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들의 성과관리도 점차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도의 성과목표 달성도인 71.1% 역시 성인지예산사업이 아닌 일반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지표는 좀 더시계열적인 자료가 구축된 이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여부가 여성수혜자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이중차이 모형 추정결과), 제도의 도입 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산서의 작성 여부가 여성수혜자의 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여성수혜자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기관을 단위로 여성수혜자의 비율 변화를 볼 때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여성수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지표들은 제도

를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하겠다. 그러므 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이후에 나타나는 가치의 변화의 중간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먼저 자료의 한계이다. 각 년도 성인지예산서, 각 년도 성인지결산서, 관련 문헌 등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 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의 제도 운영상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특히 그 분석과정에서 각 사업의 맥락 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깊이있는 젠더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평가하기에는 충 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유의해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추가연구를 통하여 비교 또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 행되면서 2010회계연도 이후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현황과 중요성, 제 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관련 정책개선에 근간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sup>■</sup>투고일: 2014년 3월 4일 ■심사일: 2014년 5월 15일 ■수정일: 2014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9일

#### 참 고 문 헌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 김경희. (2006). 〈양성평등정책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규옥. (2011).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성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동식 외. (2011).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한국 여성정책연구워.
- 김양희 외. (2006). "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 연계와 지원방안". (여성정 책포럼(32차)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워.
- 김영숙 외. (2011). 〈성인지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김영숙 외. (2012).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패널 분석 〉. 한국여 성정책연구워.
- 김영옥 외. (2007). 〈해외의 성인지 예산: 다양성과 정책적 선택〉. 한국여성 정책연구워.
- 김영옥 외. (2008).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 외. (2009).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 외. (2010).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권순현 외. (2012). "성평등 관련법제의 성과와 과제". 〈입법평가연구〉. 제6호.
- 문유경 외. (2009).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범 외. (2013).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석재은 외. (2009).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 윤영진 외. (2007).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워.
- 윤영진. (2011). "도입단계 성인지 예산서의 평가와 발전과제". 〈한국행정논 집〉. 23(2).

- 윤영진. (201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시민사회의 역할'. 한국여 성정책연구워 성인지예산센터 제2차 GB포럼 발표자료.
- 이명재 외. (2013).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 효. (2012).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세 미나 발표자료.
- 임주영 외. (2012).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 방안〉. 한국여성정책 연구워.
- 임주영 외. (2013).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및 분석평가〉. 한국여성정책 연구워.
- 전기택 외. (2011).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가워 외. (2011).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정책과 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진주 외. (2008). 〈공공지출이 성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산재보험급여의 성 불평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주 외. (2010).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여성가족부.
- 조선주 외. (2011).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I)〉. 한 국여성정책연구워.
- 조선주 외. (2012).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II)〉. 한 국여성정책연구워.
- 조선주 외. (2013a).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주 외. (2013b). 〈203년도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한국여성정 책연구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성인지 예산, 이제 시작이다〉. 한국여성정책 연구워.
- 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2003). Opinion on Gender Budgeting.
- Alesina and Ichino. (2007). Gender Based Taxation and th Division of Family Chor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 Budlender, Debbie. (1996). The Women's Budget. South Africa Cape Town: IDASA.
- Budlender, Debbie and Rhoda Sharp, Kerri Allen (1998). How to do a gender-sensitive budget analysis: contemporary research and practice.

  Commonwealth Secretariat.
- Budlender, Debbie. (2001). Review of Gender Budget Initiatives. Community Agency for Social Enquiry.
- Budlender, Debbie and Guy Hewitt. (2002). Gender Budgets Make More Cents: Country Studies and Good Practice. Commonwealth Secretariat.
- Budlender, Debbie and Guy Hewitt. (2003). Engendering Budgets: A practitioner's Guide to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Gender-responsive Budgets. Commonwealth Secretariat.
- Chichilnisky, G. (2009). "The Topology of Fear". Journal of Mathematical Economics 45.
- Diane Elson etc. (2011). Economic Policy and Human Rights: Holding Governments to Account.
- Elson, Diane. (2002) Integrating Gender into Government Budgets within a Context of Economic Reform in Debbie Budlender, Diane Elson, Guy Hewitt and Tani Mukhopadhyay(eds), Gender Budgets Make Cents. London: Commonwealth Secretariat.
- Sharp, Rhonda and Ray Broomhill. (2002). "Budgeting for Equality: The Australian Experience". Feminist Economics 8(1): 25-47.
- Sharp, Rhonda. (2003). Budgeting for Equity: Gender Budget Initiatives within a Framework of Performance Oriented Budgeting.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 Stotsky, J. (1997). How Tax System Treat Men and Women Differently. Finance and Development.
- 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 (2007a). Procedure for Sustainable Gender Mainstreaming: 'The Ladder'.

- 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 (2007b). Gender Equality in Public Services: Some Useful Advice on Gender Mainstreaming.
- UNIFEM-OECD-Nordic Council of Ministers-Belgium Government. (2001). Strengthening Economic and Financial Governance through Gender Responsive Budgeting. UNIFEM-OECD-Nordic Council of Ministers-Belgium Government High Level Conference Report. Egmont Palace. Brussels.

#### **Abstract**

# The current status and result of gender budgeting in Korea since its initial adoption in 2010

Sunjoo Cho, Gawon Chung, Hyo-Joo Kim, Youn-Sun Ch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gender budgeting in Korea

since its initial adoption in 2010 fiscal year and to develop an analytical model to assess the result.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even though gender budgeting was introduced as part of women's movement, it is being understood more as a regular financial policy by multiple stake-holders. Secondly, a strong legal foundation for gender budgeting is well laid out, but both gender budget statements and gender balance sheets are not paid much atten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irdly,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on gender budgeting is being provided to government officers, however the participation rate is not as high as intended. Fourthly, the number and budget amount of national government ministries and projects that a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s keep increasing. Finally, the performance management on the projects included in gender budgeting is becoming more vigorous as the achievement of each ministry's gender objective is closely monitored. At an earlier stage gender budget statements did not affect the ratios of women beneficiaries, but in 2010 and 2011 the ratios of women beneficiaries turn out to have increased decreasing gender gap.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findings mentioned above provide the empirical foundation on which the outcome of gender budgeting can be measured and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Key words: Gender Budgeting, Gender Budget Statement, Gender Balance Sheet, Performance Management